

서울특별시 중량물재생센터 건조시설(증설) 관리대행 동의안

의안 번호	22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10월 17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중량물재생센터 하수처리 과정의 일부시설물(건조, 분뇨, 탈수) 중 19.01월 건조시설 증설분 준공이 예정됨에 (300→650톤/일)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,
- 나. 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7조 및 「하수도법」 제19조의2에 의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관리대행을 추진하고자 하며,
- 다. 운영의 일원화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 중량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(건조, 분뇨, 탈수) 수탁재산 변경(확대)을 시행하고자, 「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건조시설(증설) 사업개요

- 위치 :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 3길64(중량물재생센터 내)
- 규모 : 350톤/일 (87.5톤/일 × 4계열)
- 사업기간 : '17. 11. ~ '18. 12.
- 시공사 : (주)풍림산업 외 1개사 (감리사 :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)
- 총사업비 : 30,614백만원 (관급비, 용역비 포함)

나. 건조시설(증설) 관리대행 추진현황

- '15.09.20 : 하수슬러지 처리 자립화 대책
- '16.03.07 :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계획
- '17.05.31 : 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
- '17.09.22 :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공사 발주
- '18.08.09 :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시설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
- '18.09.21 :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(적정)

다. 건조시설(증설) 관리대행 추진근거

- 하수도법 제19조의2 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(민간위탁 사무내용)
-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(관리·운영의 위탁)
-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(설계변경)
-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6장 (운영 및 유지관리계획)

라. 현 관리대행 개요

- 시 설 명 :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(건조, 분뇨, 탈수시설)
- 소 재 지 :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(용답동)
- 시설규모 : 건조(300톤/일), 분뇨(4,000kl/일), 탈수(570m³/hr)
- 대행기간 : 3년(2018.2월~2020.12월)
- 수탁자 : 대양엔바이오(주) *공개경쟁입찰
- 소요예산 : 8,100백만원/연

마. 주요 관리대행 내용

- 하수처리 일부시설물(건조, 분뇨, 탈수) 운영
- 방류수질 저감을 위한 관리대행 시설의 공정효율화 도모
- 관리대행 시설의 설비 유지관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
- 운영 조건별 운영인자 및 운영자료 정리, 보고에 관한 사항

바. 중량물재생센터 관리대행 현황

차 수	계약 기간	수탁 기관	비 고
1차	2003.01. ~ 2005.12	한솔이엠이	의무운전
2차	2006.01. ~ 2008.12.	한솔이엠이	재 관리대행 (공개모집)
3차	2009.01. ~ 2011.12	(주)코오롱워터앤에너지	재 관리대행 (공개모집)
4차	2012.01. ~ 2014.12	(주)코오롱워터앤에너지	재 관리대행 (공개모집)
5차	2015.01. ~ 2018.01	환경관리주식회사	재 관리대행 (공개모집)
6차	2018.02. ~ 2020.12	대양엔바이오(주)	재 관리대행 (공개모집)
	2019.01 ~ 2020.12		수탁재산 변경(확대)

※ 7차 관리대행 : 일부시설물 일괄(건조시설 증설분 포함) 공개경쟁입찰 시행

사. 건조시설(증설) 관리대행 필요성

- 건조시설 증설분의 시설운영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나, 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전문성을 갖춘 대규모의 운영인력(17인)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,
- 중량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「건조(300톤/일), 분뇨(4,000kl/일), 탈수(570m³/hr)」은 '03.01월부터 관리대행 중이며, '19.01월 건조시설 증설분 준공이 예정됨에(300→650톤/일) 따라,
- 증설분 건조시설의 운영관리를 현 일부시설물 관리대행에 일괄 대행함으로써 일원화된 관리·운영체계 확립 및 공정운영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슬러지처리 공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※ 관리대행 운영 인력 : 42(현재) → 59인(변경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하수도법 제19조의 2

제19조의2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관리대행업자”라 한다)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·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○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

제7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·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능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

○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

제74조(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서울특별시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과 김병기(☎ 2211-2580)